|  |  |  |
| --- | --- | --- |
| **반가격독점 행정 집법절차 규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8호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특별히 제정한 <반가격독점 행정 집법절차 규정>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논의,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장핑(張平)  2010년 12월 29일  **제1조** 정부가격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반가격독점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이하 반독점법이라 약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정부가격주관부서가 반가격독점에 대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의 반가격독점 집법업무를 관장한다.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권리를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서는 그 행정구역내의 반가격독점 집법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서 발생한 가격독점 안건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서 지정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조사처리하며 중대안건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직접 조사 처리한다.  **제4조**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는 법정 권한 이내에서 하급 정부가격주관부서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수탁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진행하며 기타 행정기관, 조직 혹은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조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정부가격주관부서에 가격독점혐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서면형식 및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신고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신고인이 동일 안건과 관련하여 기타 행정기관에 신고 혹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가의 여부  (2) 피신고인의 기본상황  (3) 신고인이 제공한 관련 사실과 증거  (4) 조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6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할 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경영자의 영업장소 혹은 기타 관련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  (2)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 혹은 기타 유관단위 및 개인(이하 조사대상자라 약함)에 질문하고 그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토록 요구  (3) 조사대상자의 관련 증빙서류, 협의서, 회계장부, 업무 서한과 전자데이터 등 서류,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  (4) 관련 자료를 봉인, 압류  (5)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  전항이 규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집법 담당자가 조사대상자를 질문함에 있어서는 면담, 전화 혹은 서면 등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면담 혹은 전화로 질문할 경우에는 조사질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질문 조서는 반드시 피질문자의 확인을 받은 후 피질문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구독능력이 없는 자한테는 반드시 읽어 주어야 한다.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 혹은 조사요지를 송달하며 조사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피질문자는 반드시 가격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8조** 정부가격주관부서에서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집법 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행정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9조** 정부가격주관부서 및 임직원은 집법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조사대상자는 정부가격주관부서를 협조하여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며 정부가격주관부서의 조사를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조사대상 경영자,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빙자료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제12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하고 확인한 후 가격독점행위임을 판단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결정을 내리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13조** 달성한 협의가 반독점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자는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이에 대해 심사하고 확인한다.  **제14조** 경영자가 스스로 정부가격주관부서에 가격독점협의를 달성하게 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상황에 따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일 먼저 스스로 가격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스스로 가격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는 50% 이상의 범위에서 처벌을 경감한다. 기타 스스로 가격독점협의 달성에 대한 관련상황을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감경한다.  중요한 증거란 정부가격주관부서가 가격독점협의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건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증거를 말한다.  **제15조** 가격독점혐의가 있는 경영자는 조사를 받는 기간에 조사중지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조사중지신청은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점혐의 관련 사실  (2) 당해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약속  (3) 약속이행 기간  (4) 약속해야 할 기타 사항.  **제16조** 조사대상 경영자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정부가격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중지 시에는 조사중지결정서를 작성한다.  조사중지결정서에 반드시 조사대상 경영자의 위법혐의 사실, 구체적인 약속내용, 영향 제거에 대한 조치와 기한, 약속을 전부 혹은 일부 이행하지 않을 시의 법적 결과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7조** 조사중지를 결정한 정부가격주관부서는 경영자의 약속 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경영자는 정부가격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약속 이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경영자가 약속을 이행한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조사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회복한다.  (1) 경영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약속을 전부 혹은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조사중지 결정의 의거로 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조사중지 결정이 경영자의 불완정 또는 부실 정보에 의거한 경우.  **제19조**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격주관부서는 유관 상급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경영자가 가격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정지  (2) 가격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규정을 폐지  (3)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처벌  (4) 행정권리 남용행위를 시정할 데 대한 기타의 처리건의.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수권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이 있는 조직이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0조** 조사대상자가 정부가격주관부서에 제출하는 서면형식의 설명, 신청 등 자료에는 법인대표, 기타 조직 책임자 혹은 개인이 사인하고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21조** 경영자가 정부가격주관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의 혹은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조사 처리한 안건은 처리결정을 내린 10일 근무일 이내에 국무원 가격주관부서에 관련상황, 안건조사종결보고 및 조사중지결정서, 조사종결결정서, 행정처벌결정서 등 자료를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정부가격부서는 조사종결 후 5일 근무일 이내에 관련상황, 안건조사종결보고 등 자료를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정부가격주관부서 임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 또는 집법중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가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24조** 본 규정에서 가격독점행위 조사절차와 행정처벌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하고 해석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 8 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特制定《反价格垄断行政执法程序规定》，经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办公会议讨论通过，现予公布，自2011年2月1日起施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张平  二〇一〇年十二月二十九日  **第一条** 为规范和保障政府价格主管部门依法履行反价格垄断职责，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以下简称反垄断法），制定本规定。  **第二条** 政府价格主管部门实施反价格垄断执法，适用本规定。  **第三条** 国务院价格主管部门负责全国反价格垄断执法工作。  国务院价格主管部门授权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反价格垄断执法工作。  对跨省、自治区、直辖市发生的价格垄断案件，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指定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进行查处，重大案件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直接组织查处。  **第四条** 对涉嫌价格垄断行为，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可以在其法定权限内委托下一级政府价格主管部门实施调查。  受委托的政府价格主管部门在委托范围内，以委托机关的名义实施调查，不得再委托其他行政机关、组织或者个人实施调查。  **第五条** 对涉嫌价格垄断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政府价格主管部门举报。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为举报人保密。  举报采用书面形式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进行必要的调查。调查事项包括：  （一）举报人是否就同一事项已向其他行政机关举报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  （二）被举报人的基本情况；  （三）举报人提供的相关事实和证据；  （四）需要调查的其他事项。  **第六条** 政府价格主管部门调查涉嫌价格垄断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  （一）进入被调查的经营者的营业场所或者其他有关场所进行检查；  （二）询问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或者其他有关单位或者个人（以下统称被调查人），要求其说明有关情况；  （三）查阅、复制被调查人的有关单证、协议、会计账簿、业务函电、电子数据等文件、资料；  （四）查封、扣押相关证据；  （五）查询经营者的银行账户。  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政府价格主管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  **第七条** 执法人员询问被调查人，可以采取面谈、电话或者书面等方式。  面谈或者电话询问的，应当制作调查询问笔录。调查询问笔录应当交被询问人核对后，由被询问人签字；对没有阅读能力的，应当向其宣读。  书面询问的，应当向被调查人送达调查问卷或者调查提纲，载明调查事项。  被询问人应当按照价格主管部门的要求，说明有关情况。  **第八条** 政府价格主管部门调查涉嫌价格垄断行为，执法人员不得少于二人，并应当出示中华人民共和国价格行政执法证件。  **第九条** 政府价格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对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第十条** 被调查人应当配合政府价格主管部门依法履行职责，不得拒绝、阻碍政府价格主管部门的调查。  **第十一条** 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有权陈述意见。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对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进行核实。  **第十二条** 政府价格主管部门对涉嫌价格垄断行为调查核实后，认为构成价格垄断行为的，应当依法作出处理决定，并可以向社会公布。  **第十三条** 经营者认为其所达成的协议属于反垄断法第十五条规定的情形的，应当提供有关证据材料，由政府价格主管部门审查核实。  **第十四条** 经营者主动向政府价格主管部门报告达成价格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政府价格主管部门可以酌情减轻或者免除对该经营者的处罚。  第一个主动报告达成价格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可以免除处罚；第二个主动报告达成价格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可以按照不低于50%的幅度减轻处罚；其他主动报告达成价格垄断协议的有关情况并提供重要证据的，可以按照不高于50%的幅度减轻处罚。  重要证据是指对政府价格主管部门认定价格垄断协议具有关键作用的证据。  **第十五条** 涉嫌价格垄断行为的经营者在被调查期间，可以提出中止调查的申请。  中止调查申请应当以书面形式提出，并载明下列事项：  （一）涉嫌垄断的事实；  （二）承诺采取消除行为后果的具体措施；  （三）履行承诺的时限；  （四）需要承诺的其他内容。  **第十六条** 被调查的经营者承诺在政府价格主管部门认可的期限内采取具体措施消除行为后果的，政府价格主管部门可以决定中止调查，并制作中止调查决定书。  中止调查决定书应当载明被调查的经营者涉嫌违法的事实、承诺的具体内容、消除影响的措施和期限、不履行或者不完全履行承诺的法律后果等。  **第十七条** 决定中止调查的，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对经营者履行承诺的情况进行监督。  经营者应当按照政府价格主管部门的要求，书面报告承诺履行情况。  **第十八条** 经营者履行承诺的，政府价格主管部门可以决定终止调查。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恢复调查：  （一）经营者在规定的时限内未履行承诺或者未完全履行承诺的；  （二）作出中止调查决定所依据的事实发生重大变化的；  （三）中止调查的决定是基于经营者提供的不完整或者不真实的信息作出的。  **第十九条** 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实施排除、限制竞争行为的， 政府价格主管部门可以向有关上级机关提出依法处理的建议：  （一）停止强制经营者从事价格垄断行为；  （二）废止含有排除、限制价格竞争内容的规定；  （三）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四）纠正滥用行政权力行为的其他处理建议。  法律、行政法规对行政机关和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的组织滥用行政权力实施排除、限制竞争行为的处理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二十条** 被调查人向政府价格主管部门提交书面说明、申请等资料的，应当由法定代表人、其他组织负责人或者个人签字并盖章。  **第二十一条** 经营者对政府价格主管部门作出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二十二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查处的案件，应当在作出处理决定后10个工作日内，将有关情况、案件调查终结报告及中止调查决定书、终止调查决定书、行政处罚决定书等报送国务院价格主管部门备案。  受委托的政府价格主管部门，应当在调查终结后5个工作日内，将有关情况、案件调查终结报告等报送委托机关。  **第二十三条** 政府价格主管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执法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二十四条** 本规定对价格垄断行为调查程序和行政处罚程序未作规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执行。  **第二十五条** 本规定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解释。  **第二十六条** 本规定自 2011年2月1日起施行。 |